

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6년 3월 23일

김제시의회 의장



## 1. 개정이유

- 가. 2014.8.7. 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, 현행 규칙상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도록 용어 정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변경  
(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)
- 주민등록번호 → 생년월일
- 나. 조항정정(제9조 ~ 제16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~제15조)
- “서명·날인하여야” → “서명날인 하여야” ,
  - “명시하여” → “분명하게 적어” ,
  - “당해” 를 → “해당” 등

김제시의회규칙 제 호

**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**

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” 을 “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” 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김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 를 “김제시의회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” 를 “김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명 · 날인하여야” 를 “서명날인 하여야” 로, “첨부할” 을 “붙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작성 · 첨부하여야” 를 “작성하고 붙여야” 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명시하여” 를 “분명하게 적어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,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,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의 제목 “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” 을 “(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)”으로 하고,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의 하지”를 “부치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김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및 지방자치단체”를 “및 김제시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첨부하여”를 “붙여”로 하며, 제12조제1항 중 “첨부하여”를 “붙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4조 전단 중 “명기하고”를 “명확하게 적고”로, “서명 · 날인”을 “서명날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서명 · 날인하다”를 “서명 날인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미치기”를 “미치지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에 정하는 바에”를 “에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바꾼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청원 소개 의견서

청원 건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(인)	생년월일
소개의원			
소개년월일	(인)		
<u>소개의견</u>			

(별지 제2호서식)

청원 철회요구서

청원건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①	생년월일
소개의원			
청원제출일자		청원철회일자	②
<u>철회요구사유</u>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4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

제8조(청원인 등의 진술) ① (생 략)

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,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·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(생 략)

<신 설>

제4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 분명하게 적어 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청원인 등의 진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해  
-----  
-----  
-----  
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제척과 회피)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,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.

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,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

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

2. (생략)

3.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

제10조(본회의에 부처지지 아니하는 청원) -----  
-----  
----- 부처지 -----  
-----.

1. ----- 김제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및 김제시 -----  
-----

제11조(심사보고)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,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제12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.  
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, 그 처리결과를 직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청원의 철회)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·날인을 한 "별지 제2호서식"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·날인하다.

제15조(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

제11조(심사보고) 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붙여 -----  
-----.

제12조(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)  
① -----  
-----  
----- 붙  
여 -----  
-----.  
② -----  
----- 직  
체 없이 -----  
-.

제14조(청원의 철회) -----  
-----  
----- 명확하게 적고 -----  
----- 서명날인-----  
-----  
-----  
----. -----  
-----  
----- 서명날인한다.

제15조(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

력)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기 아니한다.

제16조(징계)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김제시의회 회의규칙」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력) ----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 미치지 -----.

제16조(징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에 -----  
-----